

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		2020년도 제10차 회의록	
일 시	2020.12.29.(화) 10:00 ~ 10:30	장 소	미래관 1006호
참석의원	김진경 의원, 정광희 의원, 김재환 의원, 임지영 의원, 황태선 의원, 오일숙 의원, 왕성원 의원, 송다슬 의원, 김지훈 의원, 배진건 의원, 장용석 의원		
불참의원			
간 사	강창호 기획실장, 경희수 기획실 주임		
I. 안 건			
○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			
II. 회의내용			
○ 김진경 의장(이하 의장)이 의원정수 1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			
○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(이하 기획실장)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			
○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함			
현행		개정(案)	
제2조 (학과와 과정) ① 각 대학원에는 다음의 학과와 과정을 둘 수 있다. 1. 일반대학원 의학과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학위통합과정 약학과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학사연계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간호학과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<개정 2018.12.4> 의생명과학과 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고령친화산업학과 : 석사학위과정 <신설 2015.5.18.> 2. <생 략>		제2조 (학과와 과정) ① 각 대학원에는 다음의 학과와 과정을 둘 수 있다. 1. 일반대학원 의학과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학위통합과정 약학과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학사연계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, <u>석·박사학위통합과정</u> <개정 2021.1.1> 간호학과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<개정 2018.12.4> <u>생명과학과</u> 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<개정 2021.1.1> 고령친화산업학과 : 석사학위과정 <신설 2015.5.18.> <u>바이오융합과학과</u> :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<신설 2021.1.1.> 2. <생 략>	
제17조 (학위과정 재적연한)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적연한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9.1, 2014.1.1, 2015.8.1,		제17조 (학위과정 재적연한)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적연한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9.1, 2014.1.1, 2015.8.1,	

현행	개정(案)																								
2016.9.1., 2017.8.1., 2017.10.1., 2018.7.1., 2018.8.1., 2020.3.1.>	2016.9.1., 2017.8.1., 2017.10.1., 2018.7.1., 2018.8.1., 2020.3.1., 2021.1.1.>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일반대학원</th><th>특수대학원</th></tr> <tr> <td>석사학위과정</td><td>8학기</td><td>10학기</td></tr> <tr> <td>박사학위과정</td><td>14학기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석·박사통합과정</td><td>14학기</td><td></td></tr> </table>	구분	일반대학원	특수대학원	석사학위과정	8학기	10학기	박사학위과정	14학기		석·박사통합과정	14학기	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일반대학원</th><th>특수대학원</th></tr> <tr> <td>석사학위과정</td><td>12학기</td><td>10학기</td></tr> <tr> <td>박사학위과정</td><td>20학기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석·박사통합과정</td><td>22학기</td><td></td></tr> </table>	구분	일반대학원	특수대학원	석사학위과정	12학기	10학기	박사학위과정	20학기		석·박사통합과정	22학기	
구분	일반대학원	특수대학원																							
석사학위과정	8학기	10학기																							
박사학위과정	14학기																								
석·박사통합과정	14학기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일반대학원	특수대학원																							
석사학위과정	12학기	10학기																							
박사학위과정	20학기																								
석·박사통합과정	22학기																								
② <생 략> ③ <생 략> ④ <생 략>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적연한은 1회에 한해 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.	② <생 략> ③ <생 략> ④ <생 략> ⑤ <u>특수대학원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적연한은 1회에 한해 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.</u> <개정 2021.1.1.>																								
제21조 (지도교수) ① <생 략>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12.1.> 1.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전공 및 기초의학전공, 간호학과 : 1학기 종료시 2.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, 약학과, 고령친화산업학과 : 입학시 <개정 2014.1.1., 2018.7.1.> 3. 기타: 제47조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③ <생 략> ④ <생 략>	제21조 (지도교수) ① <생 략>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12.1.> 1.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전공 및 기초의학전공, 간호학과 : 1학기 종료시 2. 일반대학원 <u>생명과학과</u>, 약학과, 고령친화산업학과, <u>바이오융합과학과</u> : 입학시 <개정 2014.1.1., 2018.7.1., 2020.1.1.> 3. 기타: 제47조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③ <생 략> ④ <생 략>																								
제37조 (휴학) ① <생 략> ② 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또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 <생 략> ④ <생 략> ⑤ <생 략> ⑥ <생 략> ⑦ <생 략>	제37조 (휴학) ① <생 략> ② 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또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 입대, 질병, 출산(육아) 등의 중대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질병의 사유일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개정 2021.1.1.> ③ <생 략> ④ <생 략> ⑤ <생 략> ⑥ <생 략> ⑦ <생 략>																								
제 48조. 연구지도 ① <생 략> ② 「연구지도」 과목은 2개까지 학점으로 인정하며, 이후에는 「개인연구지도」 과목으로서 합격(P) 또는 불합격(NP)으로 한다. ③ <생 략>	제 48조. 연구지도 ① <생 략> ② 「연구지도」 과목은 <u>2개까지 인정하며</u>, 이후에는 「개인연구지도」 과목으로서 합격(P) 또는 불합격(NP)으로 한다. <개정 2021.1.1.> ③ <생 략>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(案)
제61조 (학위수여요건) ①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 1. <생 략> 2. <생 략> 3. <생 략> 4. 제60조의 학위논문을 SCIE급 학술지에 게재 <개정 2020.3.1.> 5. <생 략> ② <생 략>	제61조 (학위수여요건) ①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 1. <생 략> 2. <생 략> 3. <생 략> 4. 제60조의 <u>학술지게재 요건 충족</u> <개정 2020.3.1., 2021.1.1.> 5. <생 략> ② <생 략>
제65조 (학위수여) ① 학위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매 학기 수여하며, 수여식은 매년 2월의 졸업식에 행한다. ② <생 략>	제65조 (학위수여) ① 학위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매 학기 수여하며, 수여식은 <u>매년 2월, 8월에</u> 행한다. ② <생 략>
[별표 2] 학위의 종류 1.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이학석사(Master of Science) 이학박사(Doctor of Philosophy in Science)	[별표 2] 학위의 종류 1. 일반대학원 <u>생명과학과</u> 이학석사(Master of Science) 이학박사(Doctor of Philosophy in Science) <개정 2021.1.1.> <u>바이오융합과학과</u> 이학석사(Master of Science) 이학박사(Doctor of Philosophy in Science) <신설 2021.1.1.>

○ 왕성원 의원이 학칙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
○ 기획실장이 제2조(학과의 과정), 제21조(지도교수), [별표2] 학위의 종류는 학과명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할 예정이며, 제17조(학위과정 제적연한)의 경우는 재적연한을 연장하여 재학생의 연구기간을 확대하고자 함임을 설명하다.

○ 황태선 의원이 재적연한은 학생들이 석·박사 논문 작성 등 충분한 연구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몇몇 있음을 피력하며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다.

○ 기획실장이 그밖에 제37조(휴학)의 경우 기존의 규정의 경우 입대, 질병, 출산(육아) 등의 중대한 사유로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임을 설명하다.

○ 제48조(연구지도)는 기존에 연구지도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엄정한 학사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학점인정 제외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임을 설명하다.

○ 김지훈 의원이 전 학년 모두 제외 과목으로 변경되는지 질의하다.

○ 기획실장이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들의 경우 2학점까지는 학점인정 과목임을 설명하다.

- 기획실장이 제61조(학위수여요건)는 기존의 학위논문을 SCIE급에서 학술지게재 요건 충족으로 바꿈으로써 학위논문의 요건 충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과(전공)별 특성에 맞추고자 함을 설명하다.
- 마지막으로 제 65조(학위수여)는 기존의 2월 졸업식을 매년 2월, 8월 두 번으로 확대하여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설명하다.
- 임지영 의원이 대학원 졸업생이 증가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졸업식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하다.
- 의장이 상정된 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실장에게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(회의결과)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.
- 기획실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의 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하다.

III. 폐회선언

○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

확 인	의 원	서 명	의 원	서 명
	김진경	金鎭	왕성원	왕성원
	정광희	정광희	송다슬	송다슬
	김재환	김재환	장용석	장용석
	황태선	황태선	배진전	배진전
	임지영	임지영	김지훈	김지훈
	오일숙	오일숙		